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1-522-663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거주)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매가능		없음		미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9.26.(금)		25.10.13.(월)		25.10.14.(화)		25.10.20.(월)		25.10.28.(화)~ 25.10.31.(금)		25.11.04.(화)~ 25.11.07.(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가입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저축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 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일 이후의 납입인정분을 합산하여 저축총액 산정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차가 동일한 경우)	추첨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금회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순위순차제를 적용하여 선정(납입인정금액 동일 시 추첨) " <표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공고문 11p)"에 따라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순위순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class.co.kr/>)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26(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외국인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이며, 임대무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 및 공가세대)를 공급 하는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14년 4월 30일 사용승인을 득한 국민주택이며, 주택도시기금(84.9930A형 세대당 81,000,000원), (84.9930B형 세대당 81,000,000원)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상환이 이루어진 일부 세대가 존재하니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청약자는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노인정, 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 문고 등.
- 주차장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H 2,100mm X W 6,000mm
- 총주차대수 : 287대(세대당 1.22대)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천안시 공동주택과-29833호 (2025.08.11.)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 및 2개 감정평가 업체(㈜삼일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분양가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국민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의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5.10.13.(월)	2025.10.14.(화)	2025.10.20.(월)	2025.11.04.(화) ~ 2025.11.07.(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PC·모바일) 청약홈	■ 분양사무실 041-522-6637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52-9, 중흥S-클래스 101동 101호)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매가능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동주택과 - 35993호(2025.09.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52-9, (백석동 107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필로티포함) 8개동 총 236세대 중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 116세대 공급
- 입주시기 : 잔금 완납 후 즉시입주가능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국민 주택	2025000400	01	084.9930A	84A	84.9930	24.3649	109.3579	64.6127	173.9706	52.0083	91	7
		02	084.9930B	84B	84.9930	24.1129	109.1059	64.6127	173.7186	52.0083	25	3
		합 계									116	10

(단위: 원)

(단위: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계약 후 2개월 이내	
084.9930A	101	101	247,500,000	24,750,000	222,750,000	
	101	202	253,000,000	25,300,000	227,700,000	
	101	301	257,000,000	25,700,000	231,300,000	
	101	302	257,000,000	25,700,000	231,300,000	
	101	401	259,500,000	25,950,000	233,550,000	
	101	501	264,000,000	26,400,000	237,600,000	
	101	502	264,000,000	26,400,000	237,600,000	
	101	601	265,000,000	26,500,000	238,500,000	
	101	602	265,000,000	26,500,000	238,500,000	
	101	802	267,500,000	26,750,000	240,750,000	
	101	1101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1	1102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1	1201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1	1202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1	1301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1	1401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1	1402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2	101	245,500,000	24,550,000	220,950,000	
	102	202	251,000,000	25,100,000	225,900,000	
	102	301	255,000,000	25,500,000	229,500,000	
	102	401	257,000,000	25,700,000	231,300,000	
	102	402	257,000,000	25,700,000	231,300,000	
	102	501	261,500,000	26,150,000	235,350,000	
	102	801	264,500,000	26,450,000	238,050,000	
	102	901	266,500,000	26,650,000	239,850,000	
	102	902	266,500,000	26,650,000	239,850,000	
	102	1001	268,500,000	26,850,000	241,650,000	
	102	1101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2	1102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2	1201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2	1202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2	1301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2	1302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3	101	245,500,000	24,550,000	220,950,000	
103	102	245,500,000	24,550,000	220,950,000		

(단위: 원)

(단위: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계약 후 2개월 이내	
084.9930A	103	201	251,000,000	25,100,000	225,900,000	
	103	202	251,000,000	25,100,000	225,900,000	
	103	301	255,000,000	25,500,000	229,500,000	
	103	501	261,500,000	26,150,000	235,350,000	
	103	502	261,500,000	26,150,000	235,350,000	
	103	602	262,000,000	26,200,000	235,800,000	
	103	801	264,500,000	26,450,000	238,050,000	
	103	901	266,500,000	26,650,000	239,850,000	
	103	902	266,500,000	26,650,000	239,850,000	
	103	1001	268,500,000	26,850,000	241,650,000	
	103	1002	268,500,000	26,850,000	241,650,000	
	103	1101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3	1102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3	1201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3	1402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3	1501	278,000,000	27,800,000	250,200,000	최상층(다락)
	103	1502	278,000,000	27,800,000	250,200,000	최상층(다락)
	104	102	245,500,000	24,550,000	220,950,000	
	104	202	251,000,000	25,100,000	225,900,000	
	104	401	257,000,000	25,700,000	231,300,000	
	104	402	257,000,000	25,700,000	231,300,000	
	104	501	261,500,000	26,150,000	235,350,000	
	104	502	261,500,000	26,150,000	235,350,000	
	104	601	262,000,000	26,200,000	235,800,000	
	104	702	264,000,000	26,400,000	237,600,000	
	104	801	264,500,000	26,450,000	238,050,000	
	104	802	264,500,000	26,450,000	238,050,000	
	104	901	266,500,000	26,650,000	239,850,000	
	104	1001	268,500,000	26,850,000	241,650,000	
	104	1102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4	1402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5	202	256,000,000	25,600,000	230,400,000	
	105	302	260,000,000	26,000,000	234,000,000	
	105	1102	275,000,000	27,500,000	247,500,000	
105	1302	275,000,000	27,500,000	247,500,000		

(단위: 원)

(단위: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계약 후 2개월 이내	
084.9930A	105	1502	283,500,000	28,350,000	255,150,000	최상층(다락)
	106	202	256,000,000	25,600,000	230,400,000	
	106	502	266,500,000	26,650,000	239,850,000	
	106	1202	275,000,000	27,500,000	247,500,000	
	106	1402	275,000,000	27,500,000	247,500,000	
	106	1502	283,500,000	28,350,000	255,150,000	최상층(다락)
	107	202	256,000,000	25,600,000	230,400,000	
	107	302	260,000,000	26,000,000	234,000,000	
	107	402	262,500,000	26,250,000	236,250,000	
	107	502	266,500,000	26,650,000	239,850,000	
	107	902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7	1002	274,500,000	27,450,000	247,050,000	
	107	1102	275,000,000	27,500,000	247,500,000	
	107	1202	275,000,000	27,500,000	247,500,000	
	107	1302	275,000,000	27,500,000	247,500,000	
	108	102	250,500,000	25,050,000	225,450,000	
	108	202	256,000,000	25,600,000	230,400,000	
	108	302	260,000,000	26,000,000	234,000,000	
	108	702	269,500,000	26,950,000	242,550,000	
	108	902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8	1202	275,000,000	27,500,000	247,500,000	
	084.9930B	105	101	248,000,000	24,800,000	223,200,000
105		201	253,500,000	25,350,000	228,150,000	
105		301	258,000,000	25,800,000	232,200,000	
105		401	260,000,000	26,000,000	234,000,000	
105		1001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5		1101	273,000,000	27,300,000	245,700,000	
105		1401	273,000,000	27,300,000	245,700,000	
105		1501	281,500,000	28,150,000	253,350,000	최상층(다락)
106		201	253,500,000	25,350,000	228,150,000	
106		601	265,500,000	26,550,000	238,950,000	
106		701	267,500,000	26,750,000	240,750,000	
106		1201	273,000,000	27,300,000	245,700,000	
106		1401	273,000,000	27,300,000	245,700,000	
107		101	248,000,000	24,800,000	223,200,00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계약 후 2개월 이내	
084.9930B	107	401	260,000,000	26,000,000	234,000,000	
	107	501	265,000,000	26,500,000	238,500,000	
	107	601	265,500,000	26,550,000	238,950,000	
	107	1101	273,000,000	27,300,000	245,700,000	
	107	1201	273,000,000	27,300,000	245,700,000	
	107	1401	273,000,000	27,300,000	245,700,000	
	107	1501	281,500,000	28,150,000	253,350,000	최상층(다락)
	108	201	253,500,000	25,350,000	228,150,000	
	108	501	265,000,000	26,500,000	238,500,000	
	108	701	267,500,000	26,750,000	240,750,000	
	108	1301	273,000,000	27,300,000	245,700,000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책정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설자금은 소유권 이전 시 상환(또는 계약자 승계)예정이므로 분양사무소에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10년 임대 이후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 후 주택 내·외부에 대한 일부 보수공사 후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난방,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세대열쇠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되어 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3.3058 또는 형별면적(㎡)× 0.3025)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주택(세대)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1순위 내 경쟁 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천안시) 거주자 → 기타 지역 거주자」, ③<표1>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순위별 자격 요건 <table><tr><th>구분</th><th>주택형</th><th>순위</th><th>자격 요건</th></tr><tr><td rowspan="2">국민 주택</td><td rowspan="2">전 주택형</td><td>1순위</td><td>•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td></tr><tr><td>2순위</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기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써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td></tr></table>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1순위 당첨자 선정 순차 및 2순위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구분	주택형	순위	자격 요건	국민 주택	전 주택형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기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써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구분	주택형	순위	자격 요건										
	국민 주택	전 주택형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기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써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 <표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구분		내용											
전용면적 40㎡ 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내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할 경우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부간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후 신청분 무효 처리(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0.20.(월) ~ 2025.10.29(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0.2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일정

구분	계약일정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5.11.04.(화)~'25.11.07(금) (시간 : 10:00 ~ 16:00)	분양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52-9, 중흥S-클래스 101동 101호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안내

-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실 제출(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5-385-227227	세흥건설(주)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104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104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시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포함)로 간주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 및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단, 부동산거래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잔금 납부약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또는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주택가격과 별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관리비에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관리예치금은 관리소 운영자금으로 충당되는 자금으로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임)
- 계약자는 잔금납부약정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각 세대별 거주했던 임차인 설치한 부합물은 사업주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금액(잔금)을 납부약정일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고,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변단지의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잔금 납부기한이 계약체결기간(2025.11.04.(화)~2025.11.07.(금))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기간이 짧으며, 주택가격에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금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는점을 유의하셔서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주택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용자금(주택도시기금)

구분	84A, 84B	비고
주택도시기금	81,000,000원	세대당

- 해당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입니다.
- 용자금 대환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는 용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향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 내방하시어 용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천안금융센터점 041-562-9121
- 잔금의 일부를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소유권이전)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제3자 대리시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안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신분증(대리인)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외 대리인 접수 불가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기타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명	세흥건설(주)	(주)시티종합건설	(주)시티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층(신안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3-1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4호
사업자등록번호	409-81-73183	409-81-21119	132-81-73997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감리회사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동양컨설팅(주)		
감리금액(VAT 포함)	640,846,800	35,000,000		

■ 분양사무소

위치	분양문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52-9, 중흥S-클래스 101동 101호	041-522-6637

■ 세대방문 확인 기간

세대방문 확인 기간	비고
2025.09.30.(화) ~ 2025.10.02.(목) / 3일간 시간: 10:00 ~ 16:00	방문전 사전 연락 후 담당자와 일정조율